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이정희 의원 외 1인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이정희·장세구 의원(2인)

찬 성 자: 김영길·김영태·김원섭·박세채
신용하·이상호·이지연·추은희
의원(8인)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구미시 관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대여사업의 등록(안 제3조)

라. 등록기준(안 제4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0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제67조

나. 부서검토: 대중교통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제3조(대여사업의 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3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 9. (생략)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삭제
3.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너비가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4.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4. 예약소의 명칭·도면 및 위치, 그 주차장의 위치·규모(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영업구역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

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61조 관련)

항 목	등 록 기 준
1. 등록기준 대수	가.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 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하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소재하고, 주사무소 등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수
2. ~ 3. (생략)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대중교통과

조 례 명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주요 사항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안 제3조)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안 제4조)

□ 검토 결과

- 우리시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없어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영업구역이 전국인 경우 50대 이상”이라는 등록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업체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시민의 이동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소요예산: 해당사항 없음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위 조례안은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으로 조례 내용상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이 없음

4. 작성자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정책팀 김지은(☎054-480-2906)